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Social & Health Services

수혜자 개인 의무 계획(IRP)

INDIVIDUAL RESPONSIBILITY PLAN (IRP)

WorkFirst 수혜자 개인 의무 계획

JAS ID
CASE NUMBER
CLIENT ID

본인은 다음 사항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본인이 TANF/SFA 혜택을 수혜하는 동안 본인에게 아동양육업무부(DCS)와 협력하지 못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양육업무부에 협조해야만 합니다. 아동양육비를 제대로 잘 받으면 현금 보조금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 본인은 본인에 대한 보조금 수혜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TANF/SFA 현금 보조금을 일생동안 60개월간만 수혜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월간 현금 보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 본인은 일 주일에 적어도 32시간 이상의 일을 할 의무 혹은 구직, 취직 준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본인은 본인이 예정된 활동에 참석치 못할 경우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의 담당자에게 전화할 것입니다.
- 본인은 매주 아래에 지정된 시간만큼 다음 활동들을 해야만 합니다.

XC – Searching for Child Care/Adult Care(탁아소/성인 보호센터 모색)

본인은 _____에서 _____까지 탁아소 혹은 무능력 성인을 보호하는 성인보호센터추구를 위해 매주 _____시간동안 아래의 서비스 제공처에 참석하겠습니다.

본인의 케이스 매니저와 본인은 _____전에 본 IRP를 재검토할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처/사무실: _____

주소: _____

담당자 이름:_____

전화번호: _____

본인은 예정된 약속일정에 참석할 것이며 모든 요구 과제물을 완수하고 모든 요구 서류들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참석할 것입니다. 본인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는 정보를 본인의 WorkFirst 케이스 매니저/사회복지사에게 통지하겠습니다.

교통편은 이미 신청하였습니다.

약속일정에 참석치 못하거나 마감일자까지 지정된 서류들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당일 혹은 그 전에 아래 연락처로 전화하여 그 사유를 말하겠습니다.

약속날짜 당일이나 그 전에 전화로 말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간주되며 본인에게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본인은 본인에 관한 계획을 준수하지 못하는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가능한 한 빨리 본인의 WorkFirst 프로그램 담당자/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해야만 합니다. 합당한 이유로는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 본인은 병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자녀를 맡길 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은 교통편을 마련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 본인에게는 응급사태의 건강증세(신체적, 정신적, 감정적)가 있습니다.
- 본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입니다.
- 본인은 13세 미만의 제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알맞은 가격의 적합한 탁아소를 가까운 곳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 본인에게는 당면한 법적문제가 있습니다.

- 본인은 본인에게 있는 장애문제 혹은 어떤 건강증세로 인해 본 프로그램의 요건을 준수할 수 없었습니다. 혹은
- 본인은 심각한 만성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 본인은 집에서 특수 장애를 가진 아동 혹은 기타 장애 성인을 돌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인은 55세 이상으로서 아이의 부모는 아니지만 아이를 돌봐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혹은
- 본인은 DSHS 관리담당자의 도움으로 SSI를 신청 중입니다.

본인이 이 계획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는 케이스 재심 신청 혹은/및 심의회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의회를 신청할 경우 아래 본인의 케이스 매니저 서명 날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인의 보사부 사무처나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DSHS, PO Box 42488, Olympia WA 98504-2488로 연락해야만 합니다. 본인은 본인의 '수혜자 개인 의무 계획'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케이스 매니저의 서명	날짜	수혜자의 서명	날짜

JAS ID	CASE NUMBER	CLIENT ID

기밀 요건

본인은 직장에서의 승진 혹은 직장 유지, 수락, 구직 및 본인의 계획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해당 지원 서비스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케이스 재심 및/혹은 심의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아래와 같이 지원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본인의 WorkFirst 프로그램 담당자/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 차량 수리
- 의복
- 카운슬링
- 기저귀
- 교육비
- 개인위생
- 면허/수수료
- 이발
- 버스 패스
- 차량 마일리지
- 직무에 쓰일 도구
- 가족계획

본인은 본인에게 요구된 활동 등을 이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본인에게 요구된 활동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가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WorkFirst 제재조치 상태라고 합니다. 본인이 제재조치 상태에 있게 될 경우 이는 다음을 뜻합니다.

- 본인이 받는 보조금의 40% 혹은 가족 한 사람 몫의 보조금 양 쪽 중 액수가 큰 금액이 삭감될 수 있음.
- 본인의 IRP를 4주간 연속적으로 준수해야 제재조치 상태에서 해제될 수 있음.
- 본인에게 가해진 제재조치는 본인이 4주간 연속적으로 요구조건을 준수한 후 그 4주간이 끝나는 바로 그 다음 달에 해제될 것임.
- 제재조치 심의회는 본인의 케이스를 검토한 후 본인이 6개월 연속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본인의 케이스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제재조치 심의회가 본인의 케이스를 종결할 경우 다시 신청해야 함은 물론 4주 연속 참가해야만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케이스가 제재조치를 다시 받게 되면 제재조치 심의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3개월간 연속해서 제재조치를 받게 되면 본인의 케이스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재조치 상태에 있는 동안은 본인의 IRP를 준수하기 시작할 때까지 본인은 아무런 지원 서비스(예: 직장에 나갈 때 입을 의복 구입비 혹은 교통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다음을 이해합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본인이 아동양육업무부(DCS)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보조금은 삭감될 수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에는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에게 위해가 되는 조짐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TANF 지원을 받는 동안은 징수되는 아동양육비는 모두 워싱턴 주 정부에 상환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TANF/SFA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경우 DCS에서는 징수하는 아동양육비를 본인이 중단 요청을 할 때까지 계속 본인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본인은 지원서비스, 제재조치 및 아동양육비에 관한 내용을 이해합니다.

케이스 매니저 서명	날짜	수혜자의 서명	날짜